한 · 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현재 국제 경제 및 정치 질서의 특징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지역 경제통합의 흐름은 이미 세계 경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래로 한중 양국의 경제 의존도와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해외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자 해외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인접국이고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고,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중FTA에 대해 민간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상당한 관심을 두었고,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산관학 연구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양국간의 경제 의존도 및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 홍콩 · 마카오 · 대만 등을 합한 거대 경제권인 중화경제권과의 FTA추진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FTA체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일본, 동남아 그리고 유럽, 미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핫 이슈이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FTA협상 시기를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서비스시장의 진출 기회의 확대와 중국의 고도성장을 한국의 산업 고도화 및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의 FTA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FTA협상을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 가야 하는가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고, 이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 및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추이를 살펴보

면 과거 상품 협상만을 위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FTA추진 상대국으로 개도국 및 인접국을 우선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주목적은 상대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FTA전략인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외 산업경쟁력 촉진을 주로 하는 경제적 목적과는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인 면과 중화경제권 강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부 관광, 운송 등에 편중되어 있고, 중국은 한국에 비해 서비스화 정도가 낮으며 교육, 공공관리 등 공적 성격의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높아 향후 중국과의 FTA협상시 쟁점사항이 된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분석해 보면 중국은 예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협상 결과를 감안한다면 한국과 더욱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단시간 내에 수준 높은 서비스 협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 중 우리의 개방수준이 높은 법률서비스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협상전략을 진행하여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수준 높은 양허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9년 외국인자문사법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었고 올해 로스쿨 1기생 및 사법연수원의 수료생들도 대거 배출이 되어 한국 법률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인접국인 중국으로의 법률서비스의 수출 및 중국시장 개척은 필연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체결 협상 시 서비스부문 중 중점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품교역 외에 중국 대륙 대도시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가 비교적 우위에 있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에 유망한 서비스산업 분야로 꼽히는 원격교육과 온라인 게임, 법률서비스 중 중국의 법률서비스 개방현황과 관련 입법 등을 분석하고 한중 FTA체결 시 서비스시장 부문 협상에서 법률서비스에 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한중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중국의 서비스무역 시장개방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세계시장경제체제의 기초로서 자원에 대한 정부의 무역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효율적인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을 서양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그 시작이 비교적 늦어 서비스가 각 부분별로 정비되지 못하고 불균형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과 인재 관리 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를 맺어 온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정식 수교 이후 괄목할 만한 무역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양국의 무역액은 50.7억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1,59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아마 2,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제1수출시장의 자리를 쟁취하였고, 이 기간 내에 양국의 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각 영역에서 양국간의 교류와 합작은 더욱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향후 무역에 있어서 쌍방간 발전의 잠재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는 점차적으로 FTA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규모는 181.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8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에서 운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몇 년째 식지 않는 중국 내의 한류의 영향으로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의 수출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 증가와 중국 내의 한국의 서비스업(대리운전, 학원교육, 미용분야)이 신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 대외 서비스무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1979년 해외 공사 도급을 시작으로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1980년대 초부터 중국 국내여행업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해외 자본과 기술 및 화물 등의 수입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의 수출입 영역 또한 점차 확대되고 화물과 관련된 보험, 금융, 통신, 서비스, 기술서비스, 인재양성, 경영관리 및 자문 등의 서비스업종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등 중국시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에 의해 서비스의 수출입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또한 중국은 1992년에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제한된 백화점업, 국내 도소매업, 운수, 자문, 보험 등의 부분의 합작투자형태를 허가하였으며 내륙과 연해지역의 국제금융, 보험, 관광, 부동산 등의 제3산업을 개방하여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가속화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서비스업의 개방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작성한 양허표를 제출하고 GATS의 12개 서비스 분류 중의 10개, 즉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서비스 등에 내재된 100여 개의 서비스 무역을 대외 개방하였다. 또한 시장 접근의 각종 제한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외자 서비스 기업은 더욱 확대된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WTO가입 후 그 개방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10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2,86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대비 6% 감소하였다. 그 중 수출은 1,286억 달러에 이르러 2008년 동기 대비 12.1%가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은 1,582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동기 대비 0.1%가 증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세계 제5위와 제4위를 차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중국의 수출입 전체 규모가 위축되었고

서비스무역 적자율이 증가했다. 반면에 부분적 고부가가치산업인 보험, 금융 서비스의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보다 더욱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하는 국가들의 부상으로 인해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장점으로 하는 화물 무역의 흑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이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이 세계 서비스산업에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Ⅱ. 중국 서비스무역 관련 국내입법

국제서비스무역의 발전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에 중국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제조업을 대체하고,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보장하고 GATS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서비스무역법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법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나, 현재까지 독자적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 없이 대외무역법의 제4장에 매우 간단한 원칙성 법규만으로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개정한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은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에서 중국이 체결한 조약의 적용규정과 양허를 포함하고, 또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 예외규정, 예를 들어 국가나 사회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법규는 단행법규와 업종별 규범으로 산재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 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무역 관련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금융과 관련되는 법률은, 보험법(保险法), 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 증권법(证券法), 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外资金融企业管理条例),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 증권거래소관리판법(证券交易所管理办法) 등이 있고 운수업과 관련되는 법률은 해운조례(海运条例), 해운조례 실시세칙(海运条例实施细则), 외국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잠행규정(外国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暂行规定),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 등이 있다. 또한, 전문서비스방면에서는 회계사등록법(注册会计师法), 변호사법(律师法), 재중외국변호사사무소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机构管理条例) 등이 있고, 투자와 관련되는 법률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상투자방향규정지도(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시범잠행판법(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试点暂行办法) 등이 있다. 관광업과 관련해서는 여행사관리조례(旅行社管理条例)가 있다.

Ⅲ.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및 입법현황

1. 법률서비스의 시장개방현황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외경제무역과 자본의 왕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들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이 활발해지고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에 대량 유입되어 직접투자와 인수합병, 산업구조조정 등의 투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국 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가 자본이 세계시장으로 향하고 해외금융과 에너지, 기초 설비, 투자 및 대형공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 모두 투자국의 법률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교역과 첨단기술 등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시장에서의 외국 법률사무소가 거대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중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1979년의 개혁개방 후 변호사제도가 부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은 1980년대 중반에 전통적인 소송대리와 민사업무대리영역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후반기 들어 증권, 선물 정보처리기술 등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었다. WTO가입 후 외국계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진출하여 시장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성숙하고 안정된 시장운영 매커니즘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시 업무범위 및 대표처 설립 요건, 지역 및 수량 등에 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의 외국 법률사무소의 주중대표처의 대표가 매년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다음 해에 등록할 수 없고, 또한 외국 법률사무소는 중국에 등록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내 대표처 설립과 영업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한다. 첫째, 외국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련된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외국 변호사는 당사자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위탁을 받고 본국의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외국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법률사무소에 위탁방식으로 중국 법무를 처리할 수 있다. 넷째, 중국 법률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계약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간의 위탁관계를 유지하면서 법률업무를 처리한다. 이때, 외국 법률사무소 중국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어야 하며 자격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이어야 하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석대표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반면, 지역제한과 수량제한은 2002년 중국이 WTO가입한 1년 후 취소되었다.

1997년 7월을 시작으로 중국은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대표처 설립을 허가하였고, 시범 지역인 북경(北京), 광주(广州), 상해(上海), 심천(深圳)과 해구(海口) 등의 5개 도시를 시작으로 하여 후에 점차 늘어났다. 2001년 초 중국은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15개 국가의 외국 법률사무소와 홍콩 법률사무소들이 북경(北京), 상해(上海), 심천(深圳), 해구(海口), 대련(大连), 천진(天津), 청도(青岛) 등의 도시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외국 법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 법률회사들은 선진국들을 위주로 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의 법률회사들로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입을 자랑하는 50개의 외국 법률사무소의 반 이상이 중국에 대표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평균 10여 개 이상의 외국 법률회사들이 중국에 신청 허가를 내고 있다.

현재 외국 법률회사의 중국 내 대표처 설립과 운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 법률회사는 중국법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수 없으나 각종 투자관련 프로그램, 즉 화물무역이나 대표처 설립, 외국의 소송중재, 기술이전, 금융보험, 보험채권, 지식재산, 부동산업 등 실질적으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범위는 제법 넓다. 이들 분야에서 영미법계 법률사무소의 발전이 가장 우수하며, 이것은 외국 법률회사가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규모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국제업무에 종사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들과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 대표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인력자원과 시장영업에 주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해외 법률서비스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1993년 북경 군화(君和)법률사무소는 최초로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중국 변호사업의 발전과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95년 2월에는 사법부가 '법률회사의 외국 대표처 설립에 관한 관리판법(律师事务所在外国设立分支机构管理办法)'을 공포하였고, 이는 중국은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진출 현황

2011년 중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사무소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상해에 105개의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어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북경에 74개의 대표사무소가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이 85개로 가장 많은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영국이 26개소, 일본이 10개소,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10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 7개소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법인태평양 북경대표처, 법무법인광장 북경대표처, 법무법인세종 북경대

표처, 법무법인지평지성 상해대표처, 법무법인태평양 상해대표처, 법무법인동보 심양대표처, 법무법인덕로 상해대표처 등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대표사무소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에 집중 되어 있고 2004년 1월 중국과의 CEPA 체결을 통한 홍콩계 대표사무소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동 지역에 주로 진출해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화북, 화남, 서부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어 그 진출범위가 넓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 법률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중국 법률서비스무역의 입법현황

1992년 중국의 사법부(司法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은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내에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잠행규정(外国律师事务所在中国境内设立办事处的暂行规定)'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사법부의 허가를 받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비록 중국의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중국법을 해석할 수 없으며 중국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이래로 중국 내의 외국법률사무소의 설립은 단기간 내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잠재력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 내에서도 중국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다. 외국 대형 로펌들이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을 분할 잠식하고 중국 내 변호사 사무소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다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선 외국의 선진화된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중국으로 들어온다면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그들의 진출을 통해 중국 내의 변호사 사무소는 선진 관리 경험과 서비스 기능을 배워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현재 법률서비스관련 법체계는 1996년 5월 15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9차 회의를 통해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이 중심이다. 동법은 2007년 10월 28일 제1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 새로 개정이 되고 통과되어 2008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직의 성질을 규정하고 변호사 접견권이 새로 포함되어 법률 종사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변호사법은 중국 변호사제도의 성질, 임무, 책임, 변호사의 영업조건과 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기타 직업변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의무, 변호사협회,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와 관련된 법규로 "변호사자격심사수여판법(律师资格考核授予办法)", "변호사사무소등기관리판법(律师事务

所登记管理办法)", "국가출자변호사사무소 관리판법(国家出资律师事务所管理办法)", "합동변호사사무소관리판법(合伙律师事务所管理办法)", "변호사자격증관리판법(律师职业证管理办法)", "외국변호사사무소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등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 관련된 사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규로는 "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률사무소와 중국의 법률사무소와의 연합관리판법(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联营管理办法)", "중국의 법률사무자격을 취득한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주민은 중국 내에서 변호사업에 관리 종사할 수 있는 법률(取得内地法律职业资格的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居民在内地从事律师职业管理办法)",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주민이 국가 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取得内地法律职业资格的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居民在内地从事律师职业管理办法)" 등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들은 공동으로 중국법률서비스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법률서비스 관련 입법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Ⅳ.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중국의 대응전략

1.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문제점

2001년 11월 20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143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커다란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진 새로운 도전이었고,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며,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시 따라오는 외국 자본의 유입은 빈번한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 경험과 국제실무능력이 부족한 중국 법률사무소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외국 법률사무소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경우 규모나 실력면에서 그들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변호사 수는 전체인구의 1/10,000도 되지 않으며, 중국 최대 법률회사의 변호사 수는 300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속한 법률사무소는 20여 개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에 진출한 홍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법률 대표사무소의 다수는 본국에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업은 그 시작이 매우 늦어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식 변호사제도는 문화대혁명 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회복이 되어 현재까지 2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개방 후의 법률업무는 이전에 비해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서양의 변호사 제도의 발전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의 법률사무소는 규모가 작고 전문적인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무 또한 간단한 자문업무에서 복잡한 소송업무까지 복잡하다. 또한 중국의 국제경험이 없는 일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제법에 관한 지식과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중국의 법률 인력자원은 대량 유실 위기에 놓여 있다. 외국 법률사무소들은 인력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어 중국의 우수한 법과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국 법률회사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 이것은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그들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명성으로 인재를 모집하고 다국적기업의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국제적 상거래와 케이스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어 중국 법률 인재들이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크다.

2.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전략

중국은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이 영미법 국가의 법률사무소와 비교하면 경쟁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법률서비스 개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리고 홍콩과의 CEPA를 통해 같은 일국양 체제인 홍콩과의 법률시장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중국 내륙의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여 최근 북경, 상해, 광주 등을 중심으로 금융, 증권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법률사무소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GATS의 법률원칙과 관련된 서비스 규범의 요구에 의해 자국 법률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공정한 법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업의 투명도를 제고한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국제화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하여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수준을 제고하여 중국 변호사들의 해외진출 및 국제적인 업무확대의 추진을 꾀한다.

셋째,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양허와 제한에서 서로 호혜주의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GATS의 기본원칙에 의한 조건적이고 단계적인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양허계획의 실행 등이 있다.

V. 결 – 한중FTA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방안

20세기 1990년대 이래로 지역경제 단일화를 통한 서비스무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서비스무역의 구조 또한 노동밀집형에서 기술밀집형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 하에 세계 무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한중 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공통적인 영향으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의 침해와 외국 대형법률사무소들의 국내 잠식 및 국

내 기업의 영업비밀 폭로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넓어진다. 특히, 기업들은 업무에 있어 중요한 국제거래시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의 법률사무소의 국내 분소를 선택하여 국제서비스를 국내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일단 서비스 영역 중 법률, 금융 그리고 지식재산권분야의 진출을 통해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개방수준이 비교적 높은 법률서비스시장을 우선적으로 하여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출 현황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들과 한국 유학생 및 전체 교민들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현실적인 수요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책에 의해 다수의 법이 제개정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법률자문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7개의 대표사무소들이 감당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고 북경, 상해, 청도 등 연안도시뿐만 아니라 동북이나 내륙지역에도 우리 교민들과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앞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법률시장만 보더라도 올해 1,500명이 나되는 로스쿨 1기생들이 졸업을 하여 대거 구직 시장에 나왔으며, 사법연수원에서도 1,02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작년보다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법률시장의 개방이 시작되어 한국과 EU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진출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또한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2009년 3월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어 외국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고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매년 엄청난 숫자로 쏟아지고 있고 공급과 수요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국내 변호사들과 법률사무소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시장진출은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같은 문화권인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은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시장이 될 것이다. 중국 법률시장의 시장분할과 선점은 외국 법률사무소들에 의해 이미 시작되어 후발주자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더욱 분발하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홍콩 법률사

무소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해 있으면서 별도의 소수의 법률 엘리트 집단을 육성하는 등의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법률사무소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개척은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홍콩 법률사무소, 아울러 조선족 법률사무소와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한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향후 한중FTA협상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합작, 업무제휴, 중국인 변호사의 고용 등의 중국법률서비스 시장의 엄격한 요건들을 완화해 나가는 등 중국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 및 현지의 한국 기업들에게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국가 규범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인 법률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는 외국 법률서비스업의 시장접근 조건의 완화 및 비등록 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중국시장을 포함한 해외 법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법률사무소들이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세워 한중FTA협상시 현지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보다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 법률회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 은 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